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경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2247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0. 16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0. 18.

2. 제안사유

- 서울특별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·정차 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 등의 안전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주·정차 위반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10. 23. ~ 10. 27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·정차 의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를 규정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

1) 보행자전거과-6731(2024.10.30.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 제14조는 시장이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부터 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의 규정²⁾에 따라 주차의 금지와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 제35조³⁾에

2)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-이하 생략-

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. -이하 생략-

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·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.

3)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·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경찰공무원

2. 시장등(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(이하 “시·군공무원”이라 한다)

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-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⁴⁾하여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

※ 개인형 이동장치 (PM) 주차문제 해결 추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추진 내용	예산	비고
총 계		708	
'19년	「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	-	
'20년	“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” 체결		
'21년	자치구 불법주차PM 견인 시행(구-견인업체 협약체결)		
'21년	「서울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	-	
'22년	PM 신고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이관	141	
'22년	PM 주차구역 191개소, 1,584대 설치	216	
'23년	PM 신고시스템 유지관리, 상용SW 구매, 기능개선	234	
'24년	PM 신고시스템 유지관리	117	

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.

4) 2021.5.20일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

- 또한, 2022년 5월부터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 중에 있으나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동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할 것임

※ 연도별 불법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현황

(단위:건, 백만원)

견인건수 및 견인비용(견인료+보관료)									
'21.7월~12월		2022		2023		'24.1월~8월		합 계	
건수	비용	건수	비용	건수	비용	건수	비용	건수	비용
21,173	1,076	63,328	3,101	62,179	3,003	52,106	2,511	198,786	9,690

※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'21.7.15. 일부 자치구부터 시행하여 '22.1월 전체 자치구로 확대